

2024년 수출 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농식품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상담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수출 현장코칭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내수 또는 수출초보기업 대상 수출전문가의 찾아가는 수출 애로해소 및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화 육성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예정) 업체
-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 수산식품 제외
- 지원규모 : 총160업체 (기본단계 무료)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신청 마감일 : 2024. 10. 31(목) 까지)

2 지원내용

- 코칭분야 : 분야별 수출 전문위원 Pool 구성하여 1:1 맞춤형 코칭 서비스 제공
 - 지원신청시 아래 코칭분야(① 무역실무 ~ ⑤수출물류)중 최대 2개 분야 선택 가능

코칭분야	코칭내용
① 무역실무	• 수출역량 강화 위한 임직원 대상 1:1 교육 제공 - 농식품 수출절차, 기초실무, 인코텀즈, 수출협상·계약·결제 등
② 수출마케팅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반 서비스 지원 - 바이어 발굴 지원·대응, 무역 서류작성 자문, 수출협상·계약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광고·입점 대행, 해외진출 전략자문 등 유사 서비스
③ 디자인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지원 - 수출브랜드 CI·BI, 상품 패키지 개발,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제품 디자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작 등 자문 및 유사서비스
④ 법률상담	• 수출관련 법률 자문, 서류대행 등 전문 서비스 지원 - 무역 클레임·분쟁 해소 지원, 계약서 작성·상표권·특허·지적재산권 등 등록·현지법인 설립등록 대행 자문, 수출검역, 위생 등 서류 대행 등 유사 서비스
⑤ 수출물류	• 국내 운송부터 선적, 현지 도착배송까지 물류 효율화 지원 - 수출 물류비 비교분석 견적 제공, 최적루트 제시 등 유사서비스
공 통 (선 택)	• 해외 무상 샘플발송 지원 (업체당 최대 50만원 (VAT 제외)) • 내수 초보기업 대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안전망 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지원내용 * 타 지원사업 동일항목과 중복정산 불가

- ① **(현장코칭)** ^{필수} 매칭된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 또는 비대면 최대 7일 코칭 제공
 - 기본 단계는 선정업체 모두 5회(M/D)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추가 코칭 희망시 자부담 부담조건에 따라 추가 2회(6~7회)까지 진행 가능

대상 유형		기본 단계	심화 단계(희망시)
일반	■아래 우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무료 5회 (자부담 없음)	추가 1~2회 선택 가능 (횟수 무관 10만원 자부담)
우대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무료 5회 (자부담 없음)	추가 1~2회 선택 가능 (자부담 면제)
	■ 장애인 기업		
	■ 영세 기업(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미만)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대표자 기준)		
	■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우대 대상기업은 신청일자 기준 유효기간 내 인증서류 증빙 제출 시 자부담 면제

- ② **(해외 무상샘플 발송지원)** ^{선택}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운송비 지원

- 업체당 연간 50만원(VAT제외) 한도 연간 1회 100% 지원

* 정산 기준은 붙임 참조

- ③ **(수출안전망 보험지원)** ^{선택}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대비 2만달러 이내 1년 보장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내수 또는 수출 초보기업 대상 무료 지원

* 보험가입 희망 동의업체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일괄 가입, 중복 가입시 지원 제외

* 최종 가입업체 대상 보험증서 이메일 발송

3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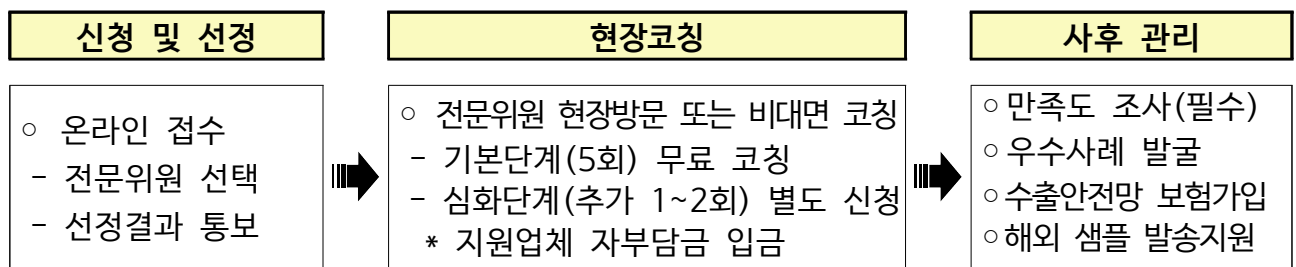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신규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 (모집공고/신청) → 2024년 수출현장코칭 지원사업 모집공고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 온라인 신청

* 서류 간편제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 위한 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필수	·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별첨 양식)	1부
필수	· 회사·제품 소개서 (자유 양식)	1부
필수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Trass) 제출 (아래 제출방법 참조)	온라인
필수	· aT 'One Pass(원패스)'을 통해 증명서류 한번에 간편제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재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국세 납입증명, 지방세 납입증명]	온라인
선택	· 가점 증빙(별첨 참조)	각1부

- 전문위원 매칭 : 최대 2개 코칭 분야의 전문위원 선택 가능
 - 전문위원 프로필(별첨)을 조회하여 코칭분야별로 전문위원을 3순위까지 선택
 - 지원업체 희망수요에 따라 최소 1개 또는 최대 2개 코칭분야 선택 가능
 - 코칭분야별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금년도 10월 말까지 수시 접수
 - 1~3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칭하되 불가피한 경우 aT 임의 배정
 - 컨설팅 품질 제고 차원 전문위원별 연간 수행 가능 업체 수 제한
- 선정기준 : 제출서류 계량평가(별첨 참조) 60점 이상시 접수일자 기준 순차 선정
 - 정보제공 및 사업 미동의, 제출서류 미비로 코칭지연, 선정제외 등 가능

□ 추진절차



* 코칭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등 컨설팅 성과분석을 위한 수진기업의 협조 필요

4 | 기타사항

□ 지원제외 * 선정 이후에도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 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aT를 비롯하여 타 수출지원사업과 동일 항목 중복정산 불가
- aT 수출컨설팅의 해외진출컨설팅과 현장코칭간 중복지원 불가
- 수행 수출전문위원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제출 또는 동의여부 확인 주소 [바로가기 링크 클릭](#)

aT 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제출 간소화서비스

aT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인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등기발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Step1 접속
http://www.trass.or.kr/at.jsp

Step2 사업자번호로 동의여부 확인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
1068200944
확인하기
사업자 번호 106-82-08944
동의여부 **대동약**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

Step3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서 제출 업체 확인
1068200944
확인하기
사업자 번호 106-82-08944
동의여부 대동약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진행에 필요한 영사의 제공을 요청하므로 귀사로부터 아래의 영사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항목
공통목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공통서 발송기관 한국무역진흥공단
계정항목 신고번호, 신고일, 수출일, 인화일, 수출처, 품목, 품목코드
출발(수출)지 한국무역진흥공단 수출관리(국외) 수출국
출발(수출)지 한국무역진흥공단 수출관리(국외) 수출국
유효기간 2019년 1월 ~ 별도 공지시까지
비밀보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동의합니다. **사업자 공동인증 동의**

* 사업자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증명서류 간편제출(One pass) 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 통한 행정기관 증명 발급·제출 자동화 [바로가기 링크 클릭](#)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공통인증서 신규등록 | 기존 사용자 로그인



- 문의처
 - aT 수출기업육성부 [✉ atcoaching@at.or.kr](mailto:atcoaching@at.or.kr) ☎ 061-931-0868

붙임 1 수출현장코칭 지원 신청서 양식

2024년 수출 현장코칭 지원 신청서						
신	업 체 명		설립연도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청	주소(본점)				홈페이지	
업	연락처	담당자			E-mail	@
		TEL			H.P	
체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식품제조·가공업체 <input type="checkbox"/> 수출업체 <input type="checkbox"/> 생산자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예비포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창업농				
현	품목	예) 김치, 고추장, 된장		매출액	(21) 천원	(22) 천원
				수출액	(22) \$	(23) \$
황	총임직원수 (23년 기준)	명	수출담당 인력	<input type="checkbox"/> 수출담당자 보유(명) <input type="checkbox"/> 대표가 직접관리 <input type="checkbox"/> 없음		
인	증보유 현 황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ISO <input type="checkbox"/> GMP <input type="checkbox"/> GAP <input type="checkbox"/> 할랄 <input type="checkbox"/> 코셔 <input type="checkbox"/> 유기인증 <input type="checkbox"/> 지리적 표시 <input type="checkbox"/> 이력추적 <input type="checkbox"/> 전통식품 인증 <input type="checkbox"/> 우수문화상품 <input type="checkbox"/> 농공상용합형 기업 <input type="checkbox"/> 6차산업 ※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시, 가점 부여				
코 칭 신 청						
신	청회차 (최대2개 분야)	<input type="checkbox"/> 1회차 분야 선택		<input type="checkbox"/> 2회차 분야 선택		
청	계기	<input type="checkbox"/> aT소개 <input type="checkbox"/> 인터넷검색 <input type="checkbox"/> 지도위원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신문 <input type="checkbox"/> SNS <input type="checkbox"/> 기타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역실무 <input type="checkbox"/> 해외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디자인개발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input type="checkbox"/> 수출물류				
전	문위	1순위	홍길동	2순위	000	3순위 000
신	청동기/ 애로사항	수출애로 및 코칭 받고자 하는 내용 (공란 부족 시 별지 작성)				
[수출안전망 보험가입 동의 여부]						
■ 가입대상 : 전년 직수출 USD 10만이하 농식품 수출기업 ■ 단, 동의업체 중 선정업체에 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무료 가입 의뢰 (보험 내용 :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49/web.do)					<input type="checkbox"/> 동의 (동의시 체크)	
본 업체는 aT 2024년도 현장코칭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신청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법인 도장)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 1. 회사 및 제품소개서, 2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온라인), 3. aT One Pass 제출증명 서류 4. 그 밖에 컨설팅 지원에 필요한 서류 5. 지원사업 동의서						

공사 수출현장코칭 지원동의서

본 동의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시행하는 수출현장코칭 지원사업에 참가 신청하는 업체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제1조(사업목적)

수출 현장코칭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및 역량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지원업체는 공사가 위촉한 수출전문위원의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2조(신청자격 및 제한)

- ① 수출현장코칭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에 적합한 기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2.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중인 기업
 3.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된 기업
 4.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기업
 5.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6.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8. 휴·폐업중인 기업
 9. 수출 전문위원과 특수관계인인 기업

제3조(등록신청)

- ① 수출 현장코칭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직접 공사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aT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기한 내 원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참여제한 및 법적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공사의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휴일 포함)을 초과하여 전문위원 매칭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공사는 지원 신청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참여제한)

- ① aT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출전문위원이 지원업체의 사업신청, 수행절차, 결과확인 등을 대리한 경우
 2. 수출전문위원과 지원업체 간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공공재정 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제5조(산출물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① 수출현장코칭 관련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aT에 귀속된다.
- ② 수출현장코칭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체는 aT의 사업홍보, 업계공유 등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③ 지원업체는 aT의 만족도 조사 등 컨설팅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① 지원업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현장코칭을 지원받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등 법령에 의거 수출 전문위원에게 폭언, 폭행, 허위불만제기 등 업무방해, 성희롱,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청렴서약)

- ② 지원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출전문위원에게 금품·향응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공공재정 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 ① 제3조 제3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T 사업담당자는 해당업체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IP 접속기록 및 활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수출현장코칭 사업추진 동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법령 등 지원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문제 발생 시 aT는 국가 수사기관에 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4. . .

지원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 도장/서명)

붙임 2 해외 무상 샘플발송 지원 기준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당해연도 수출 현장코칭 지원사업에 선정, 수출전문위원과 최종 매칭되어 최소 1일차 이상 코칭 완료한 지원기업		
지원비율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 제공 관련 통관 운송비의 100% 지원(부가세 제외) - 바이어가 개인 자격인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국제특송 샘플발송비 지원 - 운송비(EMS, DHL 등)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지원품목	○ HS·AG코드 기준 농축산물 또는 식품 (수산·임산 제외)		
지원한도	○ 연 50만원(VAT제외) / 1업체		
지원기간	○ 전문위원 코칭수행 1일차 부터 당해연도 11.30일까지 - 모든 비용 집행 및 수출신고는 11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지원조건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⑩거래구분 92 / ⑫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50kg & 10 BOX 한도까지 지원(모두 충족)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 최대 3회 인정		
필수 유의사항	○ 무상이더라도 수출신고필증을 필히 발급하여야 함, 없을 경우 정산 제외 ○ aT를 비롯하여 타기관의 유사사업 중복수령 적발시 환수 조치 및 참여 제한		
정산방법	○ <u>수출 전문위원 통해 증빙 제출</u>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업로드 → 수시 정산검토 지급		
수출 신고필증 발급방법	○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 신청 ○ 관세청 수입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전산 신청 ○ EMS 이용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 절차 진행 ○ 현장코칭 통해 매칭된 수출전문위원에게 도움 요청		
제출 증빙	○ 정상 증빙은 11월 30일까지 수시 제출 가능하며 정산 지급 ○ 지출 증빙으로 간이 영수증 인정 불가 ○ 운송장, 세금계산서, 이체증빙, 영수증, 수출신고필증 등 제반 서류 제출 ○ 지원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증빙제출 목 록 (총5종 모두)</td> <td>지원기업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입금통장 사본 ③ 국제특송 인보이스 또는 운송장 ④ 특송영수증 ⑤ 수출신고필증</td> </tr> </table>	증빙제출 목 록 (총5종 모두)	지원기업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입금통장 사본 ③ 국제특송 인보이스 또는 운송장 ④ 특송영수증 ⑤ 수출신고필증
증빙제출 목 록 (총5종 모두)	지원기업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입금통장 사본 ③ 국제특송 인보이스 또는 운송장 ④ 특송영수증 ⑤ 수출신고필증		

구 분	정산 세부 기준
지원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상 지원업체가 ③제조사, ②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에 기재되어야 인정 하되, 동일 필증으로 중복지원 불가(적발 시 환수 및 해당연도 지원 제한) ○ 지원업체와 특수관계인간 발송은 지원 제외
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50kg & 10 BOX 한도까지 지원(모두 충족) ○ (중량) 50kg 제한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 : 수출신고필증상 ③순중량 기준 -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WB) 내 운임 산출 중량(Chargeable Weight) 기준 ○ (수량) 10 BOX 제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④총포장개수 기준 ○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필증과 같아야 하며 상이할 시 지원 제외 ○ (기타) 혼적 시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분리 불가 시 지원 제외)
바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바이어 :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유통, 소매, 무역 등 농식품을 취급하거나, 취급 희망 업체(개인 불가), 수산 및 임산은 지원 불가
지원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통관료 ○ 운송비, 면장발급비 등 국내 발생 부가가치세 ○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로 발송한 비용 제반 ○ 국내외 내륙운송비의 경우 샘플 발송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 ○ 포장 상자 구매요금, 서류 봉투 비용 등 물품 포장 관련 비용 제반 ○ 정상 수출품과 혼적하여 분리할 수 없는 발송 건 ○ 송금증에서 송금자, 수신인, 송금일자,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건 ○ 인보이스의 중량·품목이 필증과 상이한 건
기타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반송 및 현지 폐기 처리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붙임 3 지원업체 선정기준 및 가점

□ 선정기준 : 계량 평가총점 60점 이상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구 간		
		4억원 미만	4억 이상 ~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매출액 (최근 2개년 평균)	30	4억원 미만 (30점)	4억 이상 ~ 9억원 미만 (20점)	9억원 이상 (10점)
업력	10	3년 미만 (10점)	3년이상 ~ 6년 미만 (8점)	6년 이상 (6점)
농식품 수출품목수 (전년도 HS코드 기준)	20	0~5품목 (20점)	6~9품목 (15점)	10품목 이상 (10점)
수출실적(연간) (전년도)	40	10만불 이하 (40점)	100만불 미만 (30점)	100만불 이상 (20점)
합 계	100	* (가점 항목) 최대 5점 * 최근 3개년 기준 신규 지원업체 5점 가점		

□ 가점 부여대상 ※ 유효기간 내 증빙자료만 인정

배점	가점 대상
2점	농식품 국가인증마크 취득업체(유기인증, GAP, 지리적 표시, 이력추적, 전통식품, 기술품질인증 등), 우수문화상품(K-Ribbon Selection), HACCP, ISO, GMP 등 시설품질 인증업체, 6차산업, 농공상융합기업, 할랄 인증
3점	여성기업,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계약재배, 농공단지 입주기업, 신선농산물 수출희망업체, 국산원료 사용업체 (품목 제조보고서 제출 등)
5점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 기업,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안부) 등], 장애인 기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사업자 대표자 기준)